

이창한 / 4월 / 실전GS A / 8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55579	17.5	10.5	17	6.5	51.5	1	0.63%	160
555585	17	10	15.5	8	50.5	2	1.25%	
555638	17	9.5	19	5	50.5	2	1.25%	
555505	15	9.5	16.5	9	50	4	2.50%	
555612	16.5	9.5	17	7	50	4	2.50%	
554748	15	11.5	15	7	48.5	6	3.75%	
555523	16.5	9.5	14.5	7.5	48	7	4.38%	
557831	16	5	18	9	48	7	4.38%	
549661	18	8.5	16	5	47.5	9	5.63%	
555537	17.5	6.5	15.5	7.5	47	10	6.25%	
555517	15	10	18.5	3	46.5	11	6.88%	
555591	15	10	15.5	6	46.5	11	6.88%	
557681	15	9.5	17.5	4.5	46.5	11	6.88%	
550528	16	10.5	12.5	7	46	14	8.75%	
554756	15	8.5	15	7	45.5	15	9.38%	
557865	16.5	11	16	2	45.5	15	9.38%	
555519	17	6	15.5	6.5	45	17	10.63%	
555613	15.5	8.5	15	6	45	17	10.63%	
555618	18	7	14.5	5.5	45	17	10.63%	
558824	12	7.5	17.5	8	45	17	10.63%	
554757	14.5	8.5	17	4.5	44.5	21	13.13%	
554785	15.5	7.5	16.5	5	44.5	21	13.13%	
555549	10.5	9	17.5	7.5	44.5	21	13.13%	
555583	15.5	9	13	6.5	44	24	15.00%	
555504	10	9.5	17	7	43.5	25	15.63%	
557823	14.5	8.5	15.5	5	43.5	25	15.63%	
558795	17.5	8.5	12.5	5	43.5	25	15.63%	
555500	14	6.5	15.5	7	43	28	17.50%	
555597	17.5	6.5	12	7	43	28	17.50%	
559590	16.5	7.5	14	5	43	28	17.50%	
557804	11.5	8.5	15.5	7	42.5	31	19.38%	
557811	12.5	9	14	6.5	42	32	20.00%	
551657	13	10	11.5	7	41.5	33	20.63%	
555577	13.5	8	13	6.5	41	34	21.25%	
557805	16.5	9	12	3.5	41	34	21.25%	
550594	16.5	8	11.5	4.5	40.5	36	22.50%	
554794	15	8	13	4.5	40.5	36	22.50%	
555524	16	6	15.5	3	40.5	36	22.50%	
555534	12.5	9	14.5	4.5	40.5	36	22.50%	
555602	13	10	12.5	5	40.5	36	22.50%	
555630	12.5	9	13	6	40.5	36	22.50%	
555601	11.5	11	13	4.5	40	42	26.25%	
555611	12.5	8	14.5	5	40	42	26.25%	
558682	12.5	6.5	16	5	40	42	26.25%	
548731	16	4	14.5	5	39.5	45	28.13%	
555582	17.5	6.5	12.5	3	39.5	45	28.13%	
559247	17	8	10.5	4	39.5	45	28.13%	
559280	13.5	8.5	12	5.5	39.5	45	28.13%	
555503	13	9	13	4	39	49	30.63%	
555538	11	6	14	8	39	49	30.63%	
557250	12.5	4	16	6.5	39	49	30.63%	
557905	14.5	4.5	14	6	39	49	30.63%	
548595	14.5	7	11.5	5.5	38.5	53	33.13%	
555507	15	5	12	6.5	38.5	53	33.13%	

555632	8	10	15.5	5	38.5	53	33.13%
558944	16	3	13.5	6	38.5	53	33.13%
548703	14	5	11.5	7.5	38	57	35.63%
549662	13	9.5	15	0.5	38	57	35.63%
554752	13	7	15	3	38	57	35.63%
555616	14	6.5	11.5	6	38	57	35.63%
554753	10.5	7	14	6	37.5	61	38.13%
555551	13	6	14	4.5	37.5	61	38.13%
555590	12	7	12	6.5	37.5	61	38.13%
555536	13	6.5	11.5	6	37	64	40.00%
555586	13	4	16	4	37	64	40.00%
555589	9.5	9.5	14	4	37	64	40.00%
559615	11.5	9	12	4.5	37	64	40.00%
555546	14	9	9	4.5	36.5	68	42.50%
557094	11	7.5	12.5	5.5	36.5	68	42.50%
554760	12.5	10.5	9.5	3.5	36	70	43.75%
555515	11	9	12	4	36	70	43.75%
555521	14	5	10	7	36	70	43.75%
559775	11	4	15.5	5.5	36	70	43.75%
555554	10	7.5	11.5	6.5	35.5	74	46.25%
555573	14.5	6	13	2	35.5	74	46.25%
555587	14	4.5	11.5	5.5	35.5	74	46.25%
555610	14	6.5	11.5	3.5	35.5	74	46.25%
557825	13	4.5	14	4	35.5	74	46.25%
555516	13.5	4.5	12	5	35	79	49.38%
559507	15	6.5	9	4.5	35	79	49.38%
555576	13	7.5	11	3	34.5	81	50.63%
557848	13	8	8.5	5	34.5	81	50.63%
555520	10	7	11.5	5.5	34	83	51.88%
554809	11.5	7.5	7	7	33	84	52.50%
555508	13.5	5	12	2.5	33	84	52.50%
555593	13.5	4.5	13	2	33	84	52.50%
548629	12	5	15.5	0	32.5	87	54.38%
550529	11	6	10.5	5	32.5	87	54.38%
555628	10.5	3.5	14	4.5	32.5	87	54.38%
557871	13.5	6	10.5	2.5	32.5	87	54.38%
559092	13	5	11.5	3	32.5	87	54.38%
554768	15	7.5	6	3.5	32	92	57.50%
555529	12.5	6	10	3.5	32	92	57.50%
559088	12.5	8	6.5	5	32	92	57.50%
555541	12.5	8.5	5.5	5	31.5	95	59.38%
557697	11.5	6.5	9	4.5	31.5	95	59.38%
557796	11	4.5	13	3	31.5	95	59.38%
557815	9	6	12	4.5	31.5	95	59.38%
557858	9	8	12	2	31	99	61.88%
559772	9	8.5	9	4.5	31	99	61.88%
111111	10.5	4.5	12	3.5	30.5	101	63.13%
555629	9	4.5	13	4	30.5	101	63.13%
556862	10	10	8	2.5	30.5	101	63.13%
559190	10	6.5	13.5	0.5	30.5	101	63.13%
548660	12	7.5	7	3.5	30	105	65.63%
548686	9.5	7	8.5	5	30	105	65.63%
549071	11	6.5	9	3.5	30	105	65.63%
555514	9	4	10.5	6.5	30	105	65.63%
550521	9.5	10	8	2	29.5	109	68.13%
555513	11.5	3.5	11	3.5	29.5	109	68.13%
555528	12.5	4.5	6.5	6	29.5	109	68.13%

559668	10.5	2.5	12.5	4	29.5	109	68.13%
555555	12	5.5	8.5	3	29	113	70.63%
557916	10.5	6	9.5	3	29	113	70.63%
559310	11.5	7	8	2.5	29	113	70.63%
548865	13.5	5	6.5	3.5	28.5	116	72.50%
555639	11	5.5	10	2	28.5	116	72.50%
557824	11	3	11.5	3	28.5	116	72.50%
559046	13.5	4.5	10.5	0	28.5	116	72.50%
548590	11	3.5	9	4.5	28	120	75.00%
549206	13	3	9.5	2.5	28	120	75.00%
555542	10.5	3.5	11.5	2.5	28	120	75.00%
555559	7.5	8.5	9	3	28	120	75.00%
559781	11	4.5	8	4.5	28	120	75.00%
555499	9.5	3	11	4	27.5	125	78.13%
555527	10	6.5	7.5	3.5	27.5	125	78.13%
559749	9.5	5	10	3	27.5	125	78.13%
554747	6.5	3	11	5.5	26	128	80.00%
555607	12.5	6	3.5	4	26	128	80.00%
555511	12	5	8.5	0	25.5	130	81.25%
557907	6.5	5.5	10.5	2	24.5	131	81.88%
558977	13.5	10.5	0	0.5	24.5	131	81.88%
555530	9.5	8.5	4.5	1.5	24	133	83.13%
558994	8	6	8	2	24	133	83.13%
559270	8.5	3.5	7	5	24	133	83.13%
559449	11.5	3.5	7.5	1	23.5	136	85.00%
548652	6.5	4.5	6.5	5.5	23	137	85.63%
555636	7	4	8	4	23	137	85.63%
548623	10.5	3	9	0	22.5	139	86.88%
555641	10	4.5	4.5	3.5	22.5	139	86.88%
557813	10	3	8	1.5	22.5	139	86.88%
558856	10	4.5	3.5	4.5	22.5	139	86.88%
555510	7	5	5	5	22	143	89.38%
555572	8	3	8.5	2.5	22	143	89.38%
558981	0	5	16	0.5	21.5	145	90.63%
561027	6	6	5.5	3.5	21	146	91.25%
555501	6.5	4	7.5	2	20	147	91.88%
548701	8	6.5	4	1	19.5	148	92.50%
555512	9	3	5	2	19	149	93.13%
557833	7	3.5	6.5	2	19	149	93.13%
557861	8	4.5	4.5	0.5	17.5	151	94.38%
558461	5.5	3.5	6.5	2	17.5	151	94.38%
555621	10.5	4	2.5	0	17	153	95.63%
558065	10	4.5	2	0	16.5	154	96.25%
558872	13.5	2.5	0	0	16	155	96.88%
559793	0	3.5	12.5	0	16	155	96.88%
558974	8	2.5	4	0.5	15	157	98.13%
559495	8.5	6	0	0	14.5	158	98.75%
554750	8.5	2.5	0	0	11	159	99.38%
558459	6.5	0	0	0	6.5	160	100.00%

< 문제 - >

17.5

5.5

1. 설문(1) - 가.

I 문제점

Z의 가장 유력한 참가 신청자 2명이다 甲과 Z의 신청으로 甲이 Z보다 먼저 신청한 참가자의 문제점이다

2. Z의 가장 유력한 참가자로

2

(1) 공동(공동) 참가 거부 - 선결

① 공동(공동)이 한쪽 당사자 시점에서 합법적일 것으로 보이는 공동(공동)인 Z의 참가가능성 (3항 2항 1항)

② Z은 과실로 인해 공동(공동) 신청에서 최후의 상황에 "당사자 자격"이 없으므로 공동(공동) 참가 불가능하다.

(2) 공동(공동) 반진참가 거부 - 선결

1) 공동(공동) 반진참가 여부 - 선결 (3항 2항)

채권의 효력이 제 3자에게 미치는 경우 참가 가능하다. 선결(선결) 당사자 자격 없더라도 라인 신청 계속 중 참가 가능하다.

2) 자판

① 자판과 Z은 공동(공동) 채권이 대해 주장 있었으나 2 권리 귀속(귀속)으로 채권의 효력이 미치는 바 (3항 2항 3항)

② 과실로 인해 甲이 신청 공동(공동) 반진참가 가능 없다 (4항 2항) 판례로 반진참가 또한 공동(공동) 반진참가



가능하다 인정한다

3. 소송 중에 甲이 乙 동의 없이 申訴하 가변 - 소극

2.5

(1) 申訴소송중 反소송이건과 反소송건 관계

① 法 67조가 규정하는 "유사필수성" 중 소송관계에 준하는 바 (해 70조) ② 각 당사자는 유리한 행위는 모두 하기 위하여 있고 ③ 불리한 행위는 관건이 없게 해야한다.

(2) 피항재인이 단독 申訴하 가변 - 소극

1) 관계

이 경우 당사자 간에 유사필수성 중 소송에 준하는 바에 유사필수성 중 소송관계와 申訴하 가능하므로 피항재인 단독으로 申訴하 가능하다고 본다.

2) 관계 비관

피항재인이 단독으로 申訴하 하는 것은 항변에 불이익을 영백해 단독 申訴하 불가하다고 한다

3) 경험 - 관계 타당

申訴하 시 申訴목적 申訴대상 申訴대상 불만사항 뒤메트 申訴목적 申訴대상, 法 67조가 규정하는 이상 피항재인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관계가 타당하다

(3) 사안. - 단독 申訴하 가능.

甲의 申訴하는 지에 불리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의 동의 없이 申訴하 할 수 있다.



4. 결론

- ① 모든 권리 (특허권) 변경가능 가능 있고
- ②. 선등록 받은 권리 권리 이 권리 취득 가능 있다

2. 선행 (1) - 나.

1. 문제점

- ① 재심사 시가 적법권리인 변경권인의 재심사 시 제가책
- ② 권리변경 변경권인 피참변의 재심 취득 가능
- ③. 재심사 변경성기 문제된다.

2. K가 재심사 시 제기 가능 - 작

(1) 변경권인이 특허권 취득 (제176조 1항 본문)

- ① 변경권인은 선등록 권리에 대해 특허권 취득 그 밖의 선등록권 모두 취득 가능하다. ② 특허권은 승인된 권리에 있어 있기 때문이다

(2) x한.

- ① 변경권인 K는 피참변 내의 재심사 시 제가책 안함
- ②라도 그제부터 권리 있는 상태에서 ③ 그 재심사 시 제가는 피참변의 "무효" 내지 안함 ④ "유리"한 행위 관해 K가 재심사 시 제기 가능하다.

3. 특허 재심사 취득 유동권리 - 작



(1) 공동연구 발명가인 피청가인 자  
이 경우 전담한 바에 의해 출원권이 존속된다

(2) 피청가인이 재심선 취하 거부 - 소극  
재심선은 재심이 소 취하는 데야만 이루어질 수 있어 본래의  
바래달 수 없게 되어 "판결 불복"이 적절하다. 피청가인  
에게 불리한 바, 피청가인 등이 유한 권 재심이 소  
취하는 불가능 여건 있다

(3) 자선  
Z이 가장 유리한 청가인 공동연구 발명가인 이상  
피청가인 ~~은~~ 단독으로 재심선 취하 불가능에 부른다

#### 4. K가 제기한 재심이 재심이 변칙성 반박하기 - 적극

(1) 재심의 변칙성 (제45조 1항 단서)

① 당사자가 상소에 의해 그 사유 주장했거나 알고  
주장 안한 때 재심의 변칙성 반박은 알지 못한  
사유 발생 시 인정된다 ② 형식 판례를 승인이 아니므로 불다

(2) 공동연구 발명가인 공동연구 자위 취하

① 발명가인 피청가인 소송진행 중에도 여러 합적  
행위를 청가인으로 인정한다

② 이는 공동연구 발명가인 경우를 같으나, 따라서 "피청가인"  
재심이 소 "변칙성" 반박은 경우에는 발명가인이나 공동  
연구 발명가인 재심이 소 부적합하다

(3) 사안

- ① 고등교육 법이 "대학입학 증명서" 재상사유 알맞은 것은  
보이지는 바 ② 학업진척에 대해 상응제까지 많은 이상
- ③ 신용회복 기관에 따라 차등된 K에 의해 알맞은  
신용회복위원에 재상사유 변경에 관한

5. 결론 - 재상사유 1 부가함

K가 제기한 사안 결론 관련 법의 재상사유 1 변경에  
의해 부가함 됨.

6. 5 판 결원(2)

1. 문제점 - 상계변환 특허권

- ① 사안에 상계 다사특자로 특허로 사법상 요건 갖는지  
특수 기관력이 작용하는지 ② 상계변환이 출원각 방식방법  
인정된 기관력 인정되는 특허권에 따라 문제된다.

2. 전고 원의 상계 다사특자로 대응채권 인정여부 - 소극

(1) 상계변환 인정된 행사의 문제점.

- ① 상계변환 처분은 상계채권 주장 했을 때 각하 또는 전정등으로  
인정된 판례지 ② 그 취지가 문제된다.

(2) 하급심

- ① 상계변환은 상계채권과 상계채권 인정된 채권으로 ② 상계변환된 채권



사범행위 자체로 ③ 양행은 하나의 행위이나 선형행위  
사범행위 두개의 성질로 ④ 신병권은 행위에 취하나  
행위에 관한 것일 때 비록 사범행위 보류 인정된다.

(3) 관례.

- ① "상계권"에 대해 이도 대응적인 관례 관례로 비록 "예비권" 행위에 있어서 ② 상계 대항시 한대자 아니라 행위의 실질 관련 있을 때 비록 실제행위 보류가 인정된다면 ③ 신병권을 인정한다.

④ "해제권"은 대응적인 선형성 행사는 신취나 이도 아무 영향 없다면 보다 비록 인정된다.

(4) 귀로.

- ① 사범행위 것은 가판권이 정당한 것일 관례, 양행은 관례 행위에 맞지 않을 비록 ③ 선형적인 선형 행위에 있어 해제권을 인정한다 ④ 상계권은 예비권 행위에 선형성 신병권을 인정한다.

(5) 지산. - 관습성립으로 대응적인 보류권

- ① 위의 상계 대항시 있었으나 이도 관습적인 관례 관례 "관습"이 있어 보류가 인정된다 ② 예비권 행위에 관습 행위에 관습 있었으므로 실제행위 보류가 없으며 ③ 위의 대항시로 대응적인 선형성이 있다.

~~3. 관례 가판권 지로~~

3. 후건에 대한 권리의 지극 여부 - 13

(1) 후건에 대한 권리의 발생 시간

- ① 후건에 대한 권리의 발생 시점과 같은 날에 (민사 소송법 292) 후건에 대한 권리의 발생 시점과 같은 날에 (민사 소송법 292)
- ② "첫 번째로 권리"에 따라 상계 채권 권리의 발생 시점과 같은 날에

(2) 상계채권 권리의 발생 시간

- ① 자동채권이 판정되거나 ② 수동채권이 청구된 날에  
이러한 시점이 ③ 일괄변환 될지 요한다.

(3) 시한 - 권리의 발생 시점으로 지극 안됨

- ① 상계변환은 "예비적" 행위로 후건에 대한 권리의 발생 시점과 같은 날에
- ② 다른 시한에 후건에 대한 "채권" 특유성이 안됨.
- ③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채"로 기재되지 않는바 이는  
④ 권리 상계채권이 대위 권리의 발생 시점과 같은 날에  
권리의 지극된다고 볼 수 없다.

4. 절로 - 부담

의사표시를 수반한 것 아닌 권리의 지극되지 않거나 부담



< 문제-2 >

I. 실문(1)

I. 문제점.

5.5

실문시행 행한 개량과 시연한 사실이 발명주의 대장인리  
문리된다.

2. 발명주의 주장책임 관련

(1) 발명주의 주장책임 의미.

실문시행 행한 개량과 시연한 사실이 발명주에 대하여  
당시자가 주장하지 않는 유리한 바를 증명하지 못하면  
주장책임 있다

(2) 주장책임의 대상 - 주문서술.

주문서술에 대해 적용되는 이는, 발명주에 관하여  
주문서술, 형식 제약을 불문 개량으로 발명주에  
관련한다.

(3) 실문주의 증거자료, 권리의 양도.

① 발명주에 대해 주문서술은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증명할 수 없다 ② 실문 제정은 개량과 관련된  
주장과 관련된 것 이다.

3. 실문시행 개량판 관련 발명 부당권리 -적극.

(1) 특허권.



1) 신기술은 기술력의 향수의 대상

신기술은 기술력 즉 기술력이란 합목적의 발명 관념  
필요한 신기술은 기존 기술의 지식영역에서 신기술을 만들어  
오래된 것을 대체하는 사실은 (향수의 대상이다)

2) 주관기술력과 본래 기술력 구분

① 향수의 비특수성 향수 향수 향수 향수 향수  
이러한 것은 본래기술보다 뒤로 주관기술 구분 및  
향수' 이러한 것이다. ② 이러한 것은 '향수'의 향수  
향수 향수 향수 향수 향수

(2) 사실 - 발명 목적

본래기술과 주관기술이 다른 경우를 향수의 비특수성  
X의 주관기술은 기술력 관념에서 본래 기술과 다른  
발명 목적이다

4. 지식영역 사실 관련 많은 것 중점연구 - 적극

(1) 기술력의 향수의 향수

향수 향수 향수 향수 향수

(2) 사실 - 발명 목적

① 이러한 것은 향수의 향수 향수 향수 향수 향수  
향수 향수 향수 향수 향수

② 향수의 향수 향수 향수 향수 향수



5. 결론. - 일부 정당

실질적인 가산금 관련 권리 "부당하다, 시정권한 수임 관련  
이러는 "타당하다"

2. 결론(리

1. 문제점

5

① 위의 말해버려야 판결이 우리나라에 효력 인정되는지 따져  
후에 가판권 기록되는지 검토한다. @ 그 권리로 승인 요건  
살펴본다.

0.5

2. 헌정수당으로 이뤄진 시국에 판결이 우리나라에 효력 있는지 - 즉

(1) ~~미국제권 승인의 요건 (헌정수당 관련)~~

국제제권인 인정, 방어필요한 승당, 사외절서 부합,  
상한보증금 사실이 인정된다.

0.5

(2) 헌정수당 관련 권양 제(의)

① 공제하는 교역수당인 위 승인요건으로 적법한 승당로 헌정수당  
전양제(의)로 즉항에 헌정수당 보다 양방면 보장수당도 승인  
요상 승당로 본다

0.5

@ 다만 헌정수당도 헌정수당 "공제수당"은 위 3은 승당로 하지 않는다

(3) 제안

① 미국 판정은 미국 승인 ~~타당도 국제제권인~~ 맞으며

@ 적법성이 X가 수장. 기판효과적 적법성에 헌정수당 보



③ 위 판례가 우리나라 공상표권 반환권 상권이 없으며  
 ④ 상표권은 없더라도 한국의 외국계권 승인권 부디  
나중에서 만든 등 승인권은 한국에 권리가 상실되거나  
중립권 침해가 될지 모르지 ⑤. 미국의 판례  
 권리로서 (한편) 이에 우리나라 판례와 동일한 효력 있다

3. 이 판례의 처리. - 각하판결.

① 가판결의 발생과 취지

한국판결의 취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미국 판결은 가판결이  
 발생에 순서가 미달수 있다 (권리로서 (한편), 항상 반대로  
 적용한다.

② 사안 - 원판결을 따라 순서 각하.

① 전판의 권리 독시비행권권이 부가되었으나 이는 적용권이  
아니므로 전판은 동일한 효력 적용권이다.

② 따라서 미국 판결에 가판결 적용되기 승인권 받은바  
판결은 순서 미달 등의 각하판결 해야한다.

4. 결론① - 미국 판결 부각

이 판결 취지는 각하 판결, 또한 판결은 부각판결이다

5. 결론② - 공시등장시 반판결 적용

① 공시등장시 미국에 상용화된 경우 전판은 바뀔 것이  
없고 (한편) 또한 효력 가판결 발생하지 않는다



② 따라서 후자는 기판결을 재검토하지 않거나 적당하다.

< 문제 3 >

1. 선행 (1) - 가.

1. 문제 3. - 기판결의 무효성 여부.

① 기판결은 당사판결에 대한 후자의 구속력은 항소판결을 유추하여

② 甲의 판결이 후자가 미처 결정하지 않은 후자가 기판결에  
적용되지 않게 된다.

2. 권리판과 권리유지권 기판결 제외

① 권리판은 관련 법령에 의해 권리결의 범위에 공동부분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상응 "부당이익" 발생을 막을 수 있는

② 이의 권리유지권 각각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위 "대리 바"가  
있어서 ③ 권리판의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부분 부당이익 발생

제거는 권리유지권에 판결의 효력 미치지 (정리 29조 3항)

④ 권리유지권 각각 판결도 권리판에 미친다.

3. 甲의 항소권 여부.

① 시정이나 다른 항소권자는 심판을 유선하게 존속하고 항소권이

② 재심판에 항소하지 않는다.

4. 후자가 재신청시 원상, 변경신청 - 적극.

①은 양신청이 보았기에 재신청시 원상 변경 신청.

(제267조 2항 마름무)

5. 후자가 기판결에 재신청시 - 적극.

① ①이 받은 패선변 부분 권리인에게 넘겨

② 전도라 같은 이유로 기판결에 책임이 없는 권리인

③. '판결유지'에 따라 ①이 패선 부분 기판결을 해야 함에  
기판결에 재신청

6. 결론 - 기판결.

(판결유지)에 따라 ①이 패선 부분 기판결을 해야 함

7. 결론 (1) - 나.

1. 재신청시 원상, 이미 취지. (제267조 2항)

① 본인판결 받은 신청이본 지는 동일한 2 지기함 두 있음.

이는 본인판결에 당시에 비해 불응 방지 위함이다.

② 그 요건으로 당시에. 상응 동일. 본인판결 후 신청이.

전달된 권리변도 이어 끝까지 오면

2. 당시에 상응 동일본지 - 적극.

① 권리인인 권리에 변이 같이 권리변도가 받은 권리의



특이 가치의 기준을 받았고 당사가 동일하게 받은 일

② 관리인은 구별유가 공익의 위해 그 각자 개별 대신 관해  
당당성도 가져야 인정된 것임.

3. 회사가 새로운 권리보존 이익 있는지 - 작위

(1) 권리보존 이익 여부

본안판결을 받은 신청인도 자라도 재신청인도 "취리" 행하여  
안고 우선 제1항 "정당성" 이익 있다면 우선 인정된다

(2) 관리인의 공익의 위해 여부 (제2)

① 구별유가 회사가 자신의 자원에 대해 "사용수익권 설정",  
"목적"으로 공익부호 받았을 때와 상충하여 상충하여 상충

② 관리인의 구별유가 관리를 위해 "공익" 위해 공익부호  
받았을 때에 부당이익 청구는 그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③. 구별유가가 본안판결 받은 신청인도 회사  
관리인의 동일인 내용의 구별유가 권리보존 이익 당위하여,  
재신청인이 인정된 것임.

(3) 사실

① 전술 항의 신청인이 있었더라도 항의 자발적 사용수익권  
관리인 S 상이 본안판결 공익의 목적, 그리고 ② S에 신청인  
책임 불거여야 본 취리 인정됨 ③ 새로운 권리보존  
이익이 있다.

4. 결론 - 본안판결 필요

- ① 甲2 패소부분은 본안판결 받고 청구가 있거나 5항 변형상의 수단은 그 "목적"에 의해 권리범도 이익 달리하여 재심하지 원칙 위반하지 않는다.
- ② "기판력" 관련 해석도 269조 1항에 의해 본안판결의 효력 인정 범위 밖의 효력도 인정 기판력 미치지 않는다
- ③ 그러므로, 적법하다는 권리 특약사항 유무는 "본안판결" 필연적

과. 실용(2)

1. 문제점 - 사후권단 효력 인정 소급.

사후권단은 소제기 전에 발생가능한 (제 269조) 사후에 행된 소제기 등행 중 소제기 사후권단 효력비 유추되는 문제된다.

2. 특허 인수계약에 의해 행된 사후권단 관련

(1) 관련 규정.

인수당에서 처음부터 소제기 상용에 사후권단 효력도 갖는다. (제 82조) 소동행위시에도 그 한편 효력은 행된때부터 효력이 미친다 (제 82조 3항, 제 80조)

(2) 사안.

특허 인수계약에 의해 소제기 상용에 사후권단 효력 받고 특허 행된때부터 유추되며, 甲에게 그 권리 효력 미친다.

3. 특허 신청과 판결로 시효기간 종료 인정

(1) 관련 규정

민법 제 170조 1항에 따라 재판상 청구 신청시효기간은 시효기간의 종료 인정받지

(2) 사안

특허 신청과 판결로 甲의 18.11.1 기준 시효기간 종료 인정받지.

4. 甲의 부속제기로 시효기간 종료 인정.

(1) 관련 규정

① 특허법 제 22조 2항 1호 (제 82조 3항, 제 80조)

② 민법 제 170조 2항에 따라 그 신청시효기간에 부속 6개월 이내의 시효기간은 시효기간 종료 인정 받는다.

(2) 사안

① 특허 신청과 판결 받은 2019. 8. 1 기준 6개월 이내인 2019. 12. 1 甲의 신청이 빠르고 ② 甲은 특허 판결 종료까지는 ③ 乙은 甲의 신청기간 18.11.1 기준 시효기간 종료 "소급"해 종료 받는다.

④ 특허 소송 계속 중 시효기간 권리행사 "지속" 되고 유효하게 된다

5 결론 - 甲 주장 인정, 乙 주장 부당

위 사건으로 시효기간 종료 계속 유지되는데 甲 주장만 인정받는다.

< 문제 4 > 6.5

I. 설문(1) - 가 (15)

1. 절차권 승계판결과 실제법상 귀속판

㉠ "실적 상속"은 상속관계 대해 절차권 변경 받지 못하여  
기관력을 복원에 개설했던 가치지 않은 후인 복당유·등기  
만 청구 가능하다고 본다.

㉡ "형질-판결"은 원(아) 달리 상속관계인 이상 상속관계  
기관력 인정 청구 바뀐 개설했던 가치지 않은 상속관계  
사실관계 후인 제기 가능 없다고 본다

㉢ 상속관계 개시유 관, 118 등 및 상속관계 하에  
판결이 타당하다

2. 후자가 기관력 개시되다시 - 적극

(1) 후안상속의 기관력 개시

0.5 상속관계 대해 후안상속자도 그 상속관계 대해 기관력  
집행력이 효력 개시되지 않은 이/대해 집행부  
원래는 "개시 유무" 결정 등 필요하다 한다.

(2) 사안

0.5 ㉠ 전산 무의 상속관계 있었으나 지어 후안상속으로 인해  
그 기관력 개시되지 않은 바, 변경권 후 시정 당까지

㉡ 후안은 무산관계로 개시된다.

3. 결론 - 저작권

기판리에 대해 저작권 부여한다

OK

2. 선출 (1) - 나

1. 추천양심의 구체성인양성 성질

→ 173조에 대해 당사 추천권수 없이 사후로 상노기만 지켜 못받게이 그 당시에 구체성인양성 성격이다.

2 추천양심과 과심이란 공권력.

학정판례의 양극단 "대륙" 절차로서 인정되며 그에 따라 그 과심판이 인정되었는데 이에 가판력 부여 받는다.

OK

3. 결론 - 그 주장 부당

甲의 기판력 인정된다는 주장은 추천양심의 '합격 성질'이

비추기 부당하다

OK



II. 실문 (2) ~~4~~

1. 우선권

특허 주장은 실용의 이익 배양에 관한 실용성 또는  
주장된 실용 효과 이익에 관한 것이다.

2. 특허 주장의 타당성 - 1.1.

(1) 발명성 판단 (제412조 1항)

상대방 실용의 이익 배양을 위하여 있거나 상대방 등의 발명성  
제기할 수 있다

(2) 사안 - 주장의 타당성

① 본 사안에서 실용의 이익 관련 없이 이익을 충분히  
제공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삼은 "유기"로 동일 발명성  
실용의 이익을 배양할 수 있다. 이미 그에 실용이 배양된  
사안이다

③ 원고가 실용의 이익을 배양할 수 있다

3. 특허 주장의 타당성

(1) 청구항의 타당성

① 원고가 특허청으로 출원한 청구항은 청구항과 그 청구항

의 발명성 이익은 청구항의 발명성 효과 또는 효과로

그 청구항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원고의 청구항은 청구항의 발명성 효과 또는 효과

피의 등기말서 반대 이익 있고 ③ 이 때에  
등기말서가 등록되어야만 반대 이익 있을 수 있다.

(2) 반대 이익 등기말서 후 발생 할 수 있다  
등기말서 이후 등기 신청 한 후 이후 발생 할 수 있다  
등기 신청 한 후 발생 할 수 있다 그 후 발 생 할 수 있다

(3) 피의 등기 신청 한 후 발생 할 수 있다  
반대 이익 발생 한 후 발생 할 수 있다  
등기 신청 한 후 발생 할 수 있다.

(4) 사안 - 주장 의 부당

1) 지 반대 이익 중 의 부당

피의 등기 신청 한 후 발생 할 수 있다 이후 발생 할 수 있다  
등기 신청 한 후 발생 할 수 있다, 가 발생 한 후 발생 할 수 있다

2) 지 반대 이익 의 부당

이 후 발생 한 후 발생 할 수 있다 이후 발생 할 수 있다  
이 후 발생 한 후 발생 할 수 있다 이후 발생 할 수 있다  
반대 이익 있 는 것 아 니 다.

3) 사안

피의 주장 의 부당

4) 사안 - 주장 의 부당

\* 추가작성의 경우 [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